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나2061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나206146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037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담당변호사 이승준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택신

변론 종결2019. 3. 14.

판결 선고2019. 4. 18.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037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5. 26. 접수 제411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쪽 제3행의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임혜진

판사허양윤

별지